
2026년도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

[구.시니어인턴십] 안내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위더스

1.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2026년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지원 기준 (p. 10)	6. 2025년 예산지원 기준 < 시니어인턴십 지원내용 >				6. 2026년 예산지원 기준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지원내용 >				
	구분	수행 기관 지원금	참여기업 지원금		구분	수행 기관 지원금	참여기업 지원금		
			총액	지원금 형태	지원내용		총액	지원금 형태	지원내용
일반형	1인당 30만원	1인당 최대 270만원 지원	인턴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일반형	좌동	좌동	인턴 지원금	좌동
			채용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좌동	채용 지원금	좌동
세대통합형	1인당 30만원	1인당 300만원 지원	채용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급 	세대통합형	좌동	좌동	채용 지원금	좌동
참여기업 지원금 지급 및 관리 (p. 38)	③ 장기취업유지형 ○ (지원수준) 장기 고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형, 세대통합형 유형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280만원의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을 지급				③ 장기취업유지형 ○ (지원수준) 장기 고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형, 세대통합형 유형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280만원의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을 지급				
	지원기간	근로유지기간		지원내역	지원횟수	근로유지기간		지원금	
	4회	18개월	80만원		3회	18개월	90만원		
	24개월	80만원		24개월		9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100만원			
	36개월	60만원							
	○ (지원금 신청) -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은 장기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지원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 유지 기간 내 상실 이력이 있거나,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하며,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지원금 신청 일자를 포함하여야 적격 증빙으로 인정 (신설)				○ (지원금 신청) -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은 장기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지원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 유지 중이어야 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하며,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지원금 신청 일자를 포함하여야 적격 증빙으로 인정 ※ 근로기간의 공백없이 사회보험이 갱신된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단, 2026년 지원 대상부터 적용)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관련 서식									
○ (변경) [서식 4]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 (변경) [서식 10]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설) [별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자 적격여부 확인									
○ (변경) [부록] 직종 분류표(한국고용직업분류, 2025)									

2.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개요

1) 사업목적

60세 이상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2) 추진체계 및 역할

- (보건복지부) ①정책결정 및 업무위탁 ②사업 운영안내 승인 ③사업 지도·점검
- (개발원 본원) ①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②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③수행기관 실무자 교육 및 지원
④중앙심의위원회 운영 ⑤사업평가
- (수행기관) ①참여기업 발굴·협약 및 참여자 모집·관리 ②참여자 직무 및 소양교육 실시 ③지원금 교부신청·지급 및 관리 ④참여기업 현장점검, 사후관리, 현황 및 결과 보고
- (참여기업) ①참여자와 약정체결 ②참여자 출결 관리 ③참여자 급여 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관리
④근로자 보호 및 산업안전관리 시행
- (참여자) ①참여기업과 약정체결 ②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및 근무



3.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요건 및 지원 내용

1) 참여기업 요건 :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보험가입사업장

※참여 제외 기업

- ①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 ②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 ③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후 지원·관리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 가능
 - ※ 고령자 고용지원금,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 등 기금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 ④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 ⑤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참여 제외 직종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71개 직종) : 의회 의원, 고위 공무원 및 정당·특수 단체 임원, 기업 대표 및 기업 고위 임원, 정부 행정 관리자, 법률·경찰·소방 및 교도 관리자,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정부 행정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감정 관련 전문가, 조세 행정 사무원, 관세 행정 사무원, 기타 정부 행정 사무원, 대학 교수, 대학 강사, 중·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특수 교육 교사,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판사 및 검사, 변호사, 법무사 및 집행관, 변리사, 기타 법률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성직자,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경찰관 및 수사관, 소방관, 소년원 학교 교사 및 교도관, 영관급 이상 장교, 위관급 장교, 준사관, 부사관, 기타 군인, 전문 의사, 일반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경호원, 청원경찰, 시설 및 특수 경비원, 보안 관제원, 기타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원, **건물 관리원, 요양보호사, 간병인, 노인 돌봄 종사원, 장애인 돌봄 종사원, 건물 청소원**, 운송 및 시설장비 청소원, 거리 및 공공장소 청소원, 재활용품 및 쓰레기 수거원, 가사 도우미, 기타 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원, 제품 영업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방문 판매원, 항공기 조종사, 선장 및 항해사·도선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우편집배원

* 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는 제외

**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국가바우처 사업에 참여중인 일자리는 참여 제외

*** **과건직은 참여제외(도급형태 가능)**

2) 참여자 요건 : 만 60세 이상의 신규채용자

(65년생 이상 가능, 66년생의 경우 생일 지나고 입사한 자)

※신청 제외

- 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참조
- ②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
- ③ 당해연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 ④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입사일 기준 이중 취업인 자)
- ⑤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 ⑥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⑦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3) 지원 내용

▶ 일반형 (1인당 6개월간 최대 270만원 지원)

지원유형	지원금 형태	지원기간	지원내역
일반형	인턴지원금	최대 3개월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 이내 = 총 120만원
	채용지원금	최대 3개월	월 급여의 50%,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총 150만원

▶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추가 280만원 지원)

지원유형	지원금 형태	지원기간	근로유지기간	지원금
장기취업유지형	장기취업유지지원금	3회	18개월	90만원
			24개월	90만원
			36개월	100만원

4. 현장실습 훈련지원 사업 제출 서류

(전체서류는 팩스 또는 메일 접수 / 원본은 채용자 발생시 회수예정)

1) 참여기업 제출 서류

- 참여기업신청서/ 운영계획서/ 협약서 : 원본
-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확인서(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사본

2) 참여자 제출 서류

- 참여자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원본
- 근로계약서/교육관리대장 : 사본

3) 지원금 제출 서류 : 사본

- 지원금 지급신청서/ 급여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4대가입자명부/ 기업계좌사본
(급여는 참여자 본인 계좌로 이체, 신용불량 증빙 가능한 경우만 현금 수령 가능)

5. 현장실습 훈련지원 사업 안내 및 문의처

위 사업은 **심의요청일 기준 입사자부터 참여가능**하기 때문에
26년도에 채용예정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꼭!! 미리 기업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070-7010-9289(2) / 052-222-1272

메일: job@inservice.co.kr

팩스 : 052-267-3171

만 60세 이상 시니어 신규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현장실습훈련사업

구. 시니어인턴십 / 1인당 최대 550만원 지원



참여기업 및 참여자 요건

-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 만 60세 이상 신규 채용자(1965년 및 이전 출생자)
(참여불가직종: 청소원, 경비원, 요양보호사, 의사 등)

지원내용

일반형	인턴지원금	수습기간 3개월간 최대 120만원 (월 40만원 x 3개월)
	채용지원금	추가 3개월간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 x 3개월)
장기취업 유지형	현장실습훈련 참여자를 18-36개월 고용 유지시 최대 280만원 추가 지원	

참여절차

수행기관 통해 기업신청 및 협약 → 채용자 등록 → 지원금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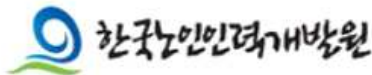
★ 기업신청일 이후 채용자만 참여가능합니다.



시니어인턴십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070-7010-9289(3)
job@inservice.co.kr



업종별 채용직무 예시

업종	직무내용
경영·사무	경영지원관리자, 영업소장, 생산관리자, 품질사무원, 사무보조원 등
연구·공학기술	전산감리, 토목공학 기술자, 배전설비 기술자, 산업안전원, 제도사 등
보건·의료	간호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음식·서비스직	조리사, 주방보조원, 흡서빙원, 주차관리원 등
운전·운송직	버스운전원, 화물차운전원, 지게차운전원, 납품원, 선반하역원 등
건설·채굴	로더운전원, 미장공, 건설배관공, 건설 단순 종사원 등
생산·설치·정비	공업기계 설치 정비원, 엘리베이터 정비원, 금형원, 선반조작원, 용접원, 재봉사, 제조 단순 종사원 등

참여 제외 직종 및 참여불가사항

- 참여 제외 직종 : 경비·청소관리자, 경비원, 청소원, 영양보호사 및 간병인, 환경미화원, 항해사, 파견직(도급형태는 가능) 등
- 참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 신청기업에 90일 이내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입사일 기준 4대보험 이종 가입자
- 신청기업의 대표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